## 이의제기신청서

이의제기인: 주식회사 가드어스 새마을금고:9002-1988-1850-4

## 이의제기사유

2024년 6월3일 17:18:47 초 입금받은 30만원 입금자명 티티앤38 2024년 6월8일 16:10:23 초 입금받은 30만원 입금자명 김소사 에게입금받은 금원의 대하여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전첵적인 설명이 필요하여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8. 3. 13.>

-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

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2023. 5. 16.>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 1. 28.]

7조2항의 법률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당사는 화장품 판매제조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하여 온 오프라인을 통하여 다수에게 광고를 통하여 위탁판매를 함으로써 다수에게 당사의 계좌가 오픈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중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어떤건지몰라 그냥 연락이오면 물건을 드리면 되겠거니 하며

기다리던중 신원을 밝히지않고 자신이 본 당사의 통장을 지급정지를

하겠다고 하여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고 몇일뒤다시 김소사라는 입금자로 3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는 변호사를 통하여 이러한상황을 설명하였더니 이것은 신종 사기수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3일입금한 30만원의 입금자명 티티앤38은 텔레그램아이디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플을 다운받아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그러한대 대뜸 30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하였고 본인은 어쩔수없이 50만원을 드릴테니해결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아니하여 이러한 상황에까지 오게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변호사를 통하여 협박범 티티앤38 (텔레그램아이디 김독종) 에게 연락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원유수 김경화가 실질적인 피해자라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이체 건이라서 바로 합의는 어렵다는 금융기관의 통지를 받았고 피해자또한 휴대전화가 꺼져있는등 받지않아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전액 피해회복을 하지않으면

당사의 계좌는 지급정지 해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사는 개설지점의 관계자와 대리인이 통화하여 가드어스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새마을금고의 계좌의 차액만 출금을 하여 60만원을 제외한 금원은 출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당연히 재이체된 하나은행 김별찬의 계좌도 지급정지해제가 될줄알았으나

되지않아 본인은 그로인한 민형사 손해배상소송까지 추가로 발생할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드어스의 같은 타은행 법인통장이 비대면제한으로 거래정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사는 현재 10일을 넘게 회사업무를 하지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는절차또한 1차계좌의 명의자 및

압수영장을 통한 내역을 확인한다음 조사가 이뤄지기에 앞으로 3개월가량은 당사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무분별한 통장협박범을 대처하고자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하여 8월부터는 지급정지해 제가 가능하며 현재도 각금융사별로 현재 통장협박사실을 근거사실로 해제를 해주며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주거나 부분지급정지로 해제하여 정상화를 해주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무분별한 계좌노출로 인하여 이번일을 계기로 당사의 계좌를 사건종결후 해지를 하기를 원하니 새마을금고에서는 이러한점을 들어 당사의 계좌를 이의제기신청을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재화와용역의 관계는 아니지만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소명을 함으로써이의 제기대상의 충족함으로 새마을금고에서는 다시한번 참작하시어 신청을 받아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주식회사 가드어스

우리 새마을금고 귀중